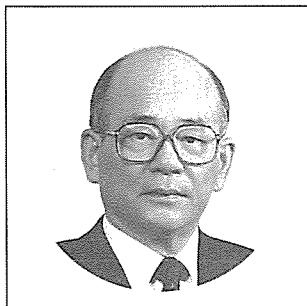


UN 環境開發會議에 따르는
환경정책 대응방안

“國內영향 最少化대응책 절실”



權 諱
前 環境處長官

I. 유엔 環境開發會議 평가

■ 회의결과 개요

유엔環境開發會議(UNCED)는 '72년의 유엔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개발(ESSD)」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였다.

지난 6월3일부터 14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14개국의 국가頂上과 178개국의 정부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宣言」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했으며 地球溫暖化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방지협약」은 154개국,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는 156개국이 서명을 했다.

우리나라는 6개부처 16명의 공식대표와 13명의 자문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여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6월11일 본회의에서 당시 환경처장관이었던

본인이 대표연설을 했으며 6월13일 頂上會議의 국무총리 기조연설에서, 國家環境宣言등 국내환경정책과 우리나라의 특수입장을 설명하고 DMZ내 生態系에 대한 南北韓 공동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

또한 6월13일에는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서명했다.

● 주된 합의내용

地球環境保護를 위한 기본지침인 「리우선언」은 최종준비회의('92.4. 뉴욕)에서 작성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채택됐으며 지구환경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원칙7)과 환경보호를 구실로 한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금지(원칙12)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있었으나 초안이 그대로 채택됐다.

리우宣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의제21」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실무조정(안)보다 약화된 형태로

채택됐다.

對開途國 재정지원은 선진국의 公的개발원조를 국가별 GNP의 0.35%에서 0.7%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구환경금융(GEF)의 운영에 개도국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環境清淨技術의 이전은 특허권으로 보호된 민간소유 기술을 적당한 사유에 의거 강제사용한후, 추후 적정 보상해 주는 강제실시가 가능토록 했으며 海洋生物資源 보호는 원칙적으로 공해상의 過多 漁撈행위를 규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국제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우리나라 대표단의 활동성과

우리나라는 先進·開途國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주도적인 조정·중재역할을 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월9일의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장단으로 피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기술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최대 역점을 두고 협상활동을 전개, 선·후진국간의 中道타협안을 제안하여 관철(公共保有技術의 특혜적 이전)시키고, '민간기업보유기술을 일단 사용한 후 추후 적정 보상'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기후변화방지협약에 대하여는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에너지 多消費型 제품생산국가에 대한 특별고려」 조항 신설을 주장하여 반영하고, 化石燃料 사용규제·에너지효율기준 설정등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사항을 완화시키는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바 있다.

또 국가간의 환경기준 차이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 및 정부의 보조금 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개진, 관련조항을 삭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해양생물자원보호분야에서는 「UN해양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타결, 원양어업의 위축 방지에도 기

여했다.

● 리우환경개발회의 평가

이번 리우환경회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환경보호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환경질서를 태동시켰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당면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국제환경질서의 기본틀이 될 「리우宣言」과 「議題21」 채택은 이번 회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협상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회의였으며 UNCED 후속조치의 조기 실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전망

「리우宣言」과 「議題21」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속 국제환경협약 체결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각국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개발」이라는 유엔환경개발회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환경 및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환경선진국에서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하여 자국의 환경기준·제도에 맞지 않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등 환경규제기준차이에 대한 무역규제(Green Roun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유엔環境開發會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합의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國際環境協約들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공업국으로서 생산·소비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수출감소 및 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며 化石燃料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방지협약의 후속 議定書 챕터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保有 生物資源이 빈약하고, 보호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보전협약의 후속의정서 챕터으로 열대산림의 벌채규제등 생물자원 감소행위 규제시, 생물자원 이용산업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수준에 비하여 환경보호 관련 투자비율이 낮고 환경기술개발수준이 저조하여, 환경선진국이 환경규제수준 차이에 대한 무역규제를 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할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I. 향후 환경정책의 대응방향

국제적인 환경보전 움직임의 대세를 수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반영하는 개발시책이 유도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무역질서 재편의 최대변수로 등장한 지구환경문제동향을 국내 환경·경제 정책과 신속히 연계시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 구축방안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예시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저공해업종으로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에너지·자원·소비절약형구조로 전환을 유도 지원하고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환경공학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보완은 물론 범정부적인 지구환경관련 대책기구의 보강·활성화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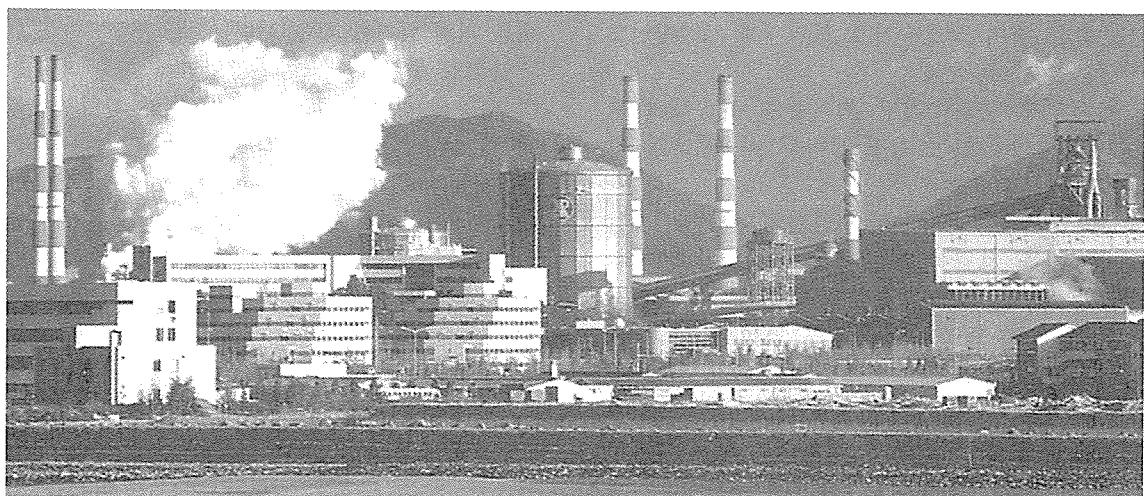
III. 장·단기 추진대책

■ 단기대책

● 국내 환경규제기준의 강화

지구환경보호를 대의명분으로 한 선진국들의 무역규제조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기업의 대응능력과 국내 환경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연차별 강화기준을 예시('90.8 기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 활



성화를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세제혜택을 확충함과 동시에 기존 환경오염방지기금에 금년부터 시행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융자 재원으로 추가 확보토록 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상의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사업승인기관에 1차적인 이행관리책임을 부여하되 사업특성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중요항목에 대하여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평가대상사업의 정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총리훈령을 제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폐기물재활용 촉진기반 구축

생산과정에서부터 균원적인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기존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 대상품목을 1회용품으로 확대하며 상품의 재활용 촉진표시제를 도입하고, 포장재 감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금년은 5개 중점 재활용품목을 집중 수거토록 하고 분리수거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주민에게 재생화장지, 재생노트등 현물로 직접 지급토록 한다. 쓰레기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물수거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회수·분류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보관용기를 보급하고 재활용 사업소와 기계식 상하차·압축장비를 확충하며 대형전물에 대해서도 '93년부터 분리배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연금매점과 백화점에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는 한편 재생공책과 화장지를 시범재활용품목으로 선정, 각급

학교에 상품등으로 우선 보급토록 하는등 재생 산업의 육성 지원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환경홍보 및 교육강화

국가환경선언과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제고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계도를 강화해 나가고 민간주도의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 전문가,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TV간담회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경제수준과 조화된 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집중 홍보해 나가야 한다.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가능한 사회환경교육수단을 모두 동원,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국제환경질서와 국내정책을 연계·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국제환경질서의 변화는 국내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 부처에서 담당이 곤란하며, 신속한 정보취득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구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고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기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기업,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유도해 나가고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효율성 증대를 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화될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외교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환경선진국에 주재관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환경회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토록 한다.

■ 중장기 대책

● 에너지 低消費, 低公害업종으로 산업구조 조정

장기에너지 수급구조에 화석연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장기에너지

수급계획, 장기전원개발계획 및 장기 LNG수급조정시 동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난방 및 열병합 발전시설을 쓰레기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보급 확대토록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가격 또는 세제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간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등 공해업종에 대한 시설·공정개선을 통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시켜나가고 정밀기기, 전자, 유전공학 관련산업등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공해물질 배출이 적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중점 육성토록 한다.

● 環境清淨技術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8천1백5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의 환경관련 기술을 환경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아래 고효율 수질·대기오염 방지기술, CFCs 대체물질 개발기술, 고성능 소각처리기술 개발등 22개 환경공학 기술을 21세기 선진 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으로 중점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세계지원 등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으로 환경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및 해외 신시장 개척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내 생물자원 보호

전국의 생물자원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에 가입을 추진하여 유전공학기술 도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 東北亞圈의 환경협력 강화

東北亞지역내 동일 환경영향권 국가들과 대기오염, 해양보전등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1대 1협력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확산시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DMZ내 생태계의 남북한 공동 조사, 北西太平洋 해양 환경조사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UNCED 정상회의 시 국무총리 기조연설로써 이미 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

●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환경개선 中期종합계획('92~'96)상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부여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의 일부로 인식하고, 단기 간내에 가지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초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쓰레기 처리시설등의 立地難 해소를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한다.

IV. 산업계의 대응방향

환경규제기준의 국제수준으로의 강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환경관련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기해 나가야 한다.

환경오염방지기술, 清淨기술,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며, 청정기술 CFCs 대체물질 개발기술 및 대체물질 이용기술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질 경우 새로운 기술종속이 우려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외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와 환경기술의 고급화·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환경산업을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과 자본능력을 구비한 대기업은 공공성이 강한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생산제제와 제품의 사용주기(Life-Cycle)장기화 유도등,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절약형 소비형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